

②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78조의2(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) 법 제74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.	제78조의2(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	1의2. ----- ----- 출산전후휴가(이하 이 조에서 “출산전후휴가”라 한다) -----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